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43호 2003. 12. 6)

총무위원회  
2003. 12. 13(토)

## 1. 심사경과

- 가. 2003. 12. 4 : 사천시장 제출
- 나. 2003. 12. 4 :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3. 12. 6 :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세무과장 강대평)

### 가. 개정이유

- 사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과 정부 정책적인 감면규정 중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규정은 세제 지원기간을 단축하고 감면조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자구수정이 불가피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범위를 축소함(안 제5조)
  - 현행 전액면제→50% 경감
- (2)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감면규정 신설(안 제11조)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 위함.
- (3)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함(안 제13조)
  -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 형평상 면제규정을 폐지
- (4)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단축함(안 제23조)
  - 현행 5년간→3년간

- (5) 수도권 중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신설(안 제25조)
  - 최초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그후 2년간 50% 감면
- (6)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함(안 제27조)
  - 현행 전액면제→50% 경감

###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박명돈)

개정조례(안)은 사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과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범위 축소와,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단축,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신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 축소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